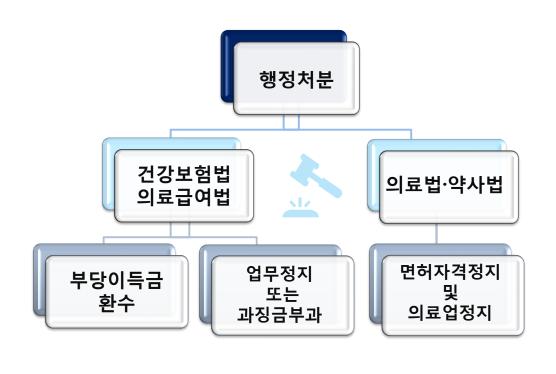
행정처분 종류



22

(단위 :일)



1) 의료법에 근거 행정처분(면허정지)

허위 청구 4중 처분
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- 2)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환수,업무정지,과징금
- 3) 의료법, 형법에 의해 형사 처벌
- 4) 허위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(의료법 66조3항)
- 5) 하나의 행위에 대해 처벌은 사실상 4번 받음 헌법상의 평등권, 형평성, 비례의 원칙, 과잉금지의 원칙에 사실

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관련

상 위배

조사대상기간 6개월 (진료비1억) → 총 부당금액 300만원 → 부당비율 3% → 월평균부당금액 50만원 → 업무정지 일수는?

부당금액 정산 및 행정처분 산출

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부 당 비 율 월평균 0.5%이상 1%이상 2%이상 3%이상 4%이상 부당금액 5%미만 1%미만 2%미만 3%미만 4%미만 15만원이상-25만원미만 10 20 30 25만원이상-40만원미만 10 20 30 40 50 40만원이상-80만원미만 10 20 30 80만원이상-320만원미만 20 30 40 50 60 과징금 부과 11-30일 51일 이상 31-50일 10원

• 총부당금액

X 4

• 총부당금액

X 5

2)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 부과 (업무정지1년, 과징금 5배 초과 불가)

업무정지 가중 처분

면허자격정지 개념

1) 5년 이내에 업무정지(과징금처분)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• 총부당금액

X 2

면허자격 정지

3) 5년 기산 방법: 행정처분통보문서 송달일자로 부터 부당청구가 다시 확인 된 날(현지조사 확인서 징구일)

•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거짓청구 →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

의료법 제66조(자격 정지 등)제1항 제7호

• 약사법 제79조(약사û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)제2항

의료업 정지

0.5% 01

1% 미만

• 총부당금액

X 3

-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 불가 • 의료법 제66조(자격정지 등)제3항 → 관련 서류를 위조,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
- 거짓청구 한 때(자격정지) 거짓청구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

거짓청구금액

보건의료원,

보건소,

보건지소

보건진료:

의료법 및 약사법

월평균

의료기관

100151 0101

행정처분 절차

1. 처분사전통지

2. 의견청취

(단위 : 월)

4% 이상

5% 미만

거 짓 청 구 비 율

3% 이상

4% 미만

2% 이상

3% 미만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5% 이상
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	12만원 비만	4만원 비만	_	_	1	2	3	4
	12만원 이상 - 20만원 미만	4만원 이상 - 7만원 미만	-	1	2	3	4	5
	20만원 이상 - 40만원 미만	7만원 이상 - 10만원 미만	1	2	3	4	5	6
	40만원 이상 - 160만원 미만	10만원 이상 - 20만원 미만	2	3	4	5	6	7
	160만원 이상 - 700만원 미만	20만원 이상 - 35만원 미만	3	4	5	6	7	8
	700만원 이상 - 2,500만원 미만	35만원 이상 - 50만원 미만	4	5	6	7	8	9
	2,500만원 이상	50만원 이상	5	6	7	8	9	10
Health Insura	※ 거짓청구비율(%)=총 거짓청구금액/진료(약제)급여비용총액×100							
현지실사 후 처분선택 업무정지 VS 과징금 최대 5배 선택시 고려점								
(1억 낼 것이냐? VS 5개월 쉴것이냐?)								
4								

이상

미만

개선방향 - 면허정지, 업무정지 같은 처벌은 최종심 판결 이후 시행해야

• 처분 내용 및 근거 • 의견 제출 방법

•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

→ 최종판결 전 업무정지가 시행된다

- 3. 의견검토 •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평원에서 검토하여 복지부에 보고
- 4. 행정처분 •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
- 형사고발 기준

5. 관련근거: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, 제22조제3항

• 우편 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의견제출

•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 2. 서류 미제출, 거짓보고, 거짓서류제출, 조사거부·방해·기피할 경우(건보법 제 116조)

1.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(건보법 제115조)

- 1천 만원 이하 벌금 3.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
-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(형법 제347조) 4. ※ 고발(내부기준) 거짓청구금액 750만원 또는 거짓청구비율 10% 이상인 기관
-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(법 제 100조)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u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위반행위,
- 처분내용, 명칭, 주소, 대표자의 성명 등을 공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: 위원장 1인 포함 9명, 임기 2년(연임 가능)
- 1. <공표대상> 거짓청구금액 1,500만원 이상 거짓청구비율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2. <공표방법> - 보건복지부, 심평원, 공단, 시u군u구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 -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에
- 해당하는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 3. <공표절차> - 건강보험 공표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대상 선정 →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→ 소명자료
- 검토 후 최종 대상확정 → 인터넷 · 언론 등에 공표
- 현지실사문제점
- 1) 실적, 처벌 목적이 아니라 운용 취지에 맞게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위해 운용해야
- 2) 행정조사기본법 미준수 최소한의 조사원칙,조사권 남용금지 (4조1항) 공동조사원칙,중복조사금지(4조3항, 15조) 처벌보다 계도원칙(4조4항) 조사목적, 조사범위와 내용 명확화의 원칙(11조) 7일전 사전통지원칙(17조)